

5 재정운용성과

5-1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

- 과**
- 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기준재정수요 반영액 (세출 효율화)	기준재정수입 반영액 (세입 확충)
1,048	9,340

- ▶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7. 12월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❖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7년	2018년
계	6,045	1,048
인건비 절감	741	548
지방의회경비 절감	△8	△3
업무추진비 절감	201	219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△1,389	986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5,455	△1,933
지방청사 관리·운영	1,045	1,231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0

❖ 수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7년	2018년
계	△27,204	9,340
지방세 징수율 제고	△4,664	△1,032
지방세 체납액 축소	△13,937	9,428
경상세외수입 확충	△4,569	△1,529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△1,195	2,456
탄력세율 적용	△2,839	0
지방세 감면액 축소	0	17

5-3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☐ 2017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합 계		700
법령위반 과다지출	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부적정	700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융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, 위반, 예산편성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

5-4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☐ 2017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증액금액
합 계		40
경진대회경진대회입상	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(장려상)	40

- ▶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